

포항 우현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2026. 7. 27.]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재정 지원으로 건설되었으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다른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사에서 모집공고 관련 상담을 하고 있으나, 상담자의 구체적인 상황 누락 시 부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입주 신청과 관련한 상담(유선)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공고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신청과정에서 불이익(기한 내 서류 미제출 탈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07.27.**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나이, 주택소유, 자산, 소득)의 판단기준일**이 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계약 시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대학생·청년계층은 1인 1주택)**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7.)**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 및 임대조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 신청 불가)

①대학생 계층

-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청년계층

- 청년: 만19세 이상 만39세이하인자(출생일: 1986.07.28.~2007.07.27.)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 2)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 3)「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③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사람(출생일: 1961.07.27.이전)

⑤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행복주택의 신청접수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로 받습니다. 등기우편은 서류 제출기한 내 우체국 소인(2026.08.12.(수))이 찍힌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동일유형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중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 주택단지 개요



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복주택		
주택위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42(우현동 539)		
건축규모	대지면적 758㎡, 건축연면적 1,944.7㎡, 1동 8층		
총세대수	29세대	최초 입주	2024년 4월
주택유형	공동주택(아파트)	주택규모	21㎡ 4세대, 44㎡ 25세대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난방	개별난방
편의사항	장애인 겸용 승강기 1대, 주차대수 21대(장애인 주차1대, 경차 2대 포함), 관리사무소, 분리수거장		

2 모집대상 주택

공급 형태	공급대상	세대 당 계약면적(㎡)					세대수	공가 세대	금회 모집인원
		주거 전용	방의수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총계							29		
21	대학생/청년/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1.13 (6평)	1	11.34	2.40	34.87	4	2	20
44	대학생/청년/ 신혼부부/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44.66 (13평)	2	22.47	5.07	72.21	25	3	30

- **현재 바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가주택은 5세대**이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발생할 때 예비입주자에게 입주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순번에 따라 입주까지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입주순번이 도래한 경우 계약 및 입주안내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해당 시기에 입주가 어려울 경우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21형책상 및 의자 1대, 가스레인지 2구, 냉장고(189L) 1대, 44형가스레인지 3구 외에 제공되는 가전, 가구는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지하층(기계실, 통신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청년계층이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44㎡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주택의 호실은 신청 공급형에 따라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에 의해 배정되므로 선호하지 않는 호실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조건

-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7.27.)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입니다.**
- 「행복주택 공급 및 운영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매년 4/1)이 적용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의 경우, 공가 및 향후 해약세대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합니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6.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청년은 소득유무에 따라 다른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대학생) 입주자의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동전기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위 : 원]

공급평형	공급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전환보증금	전환임대료
21㎡	대학생 (소득 없는청년)	18,700,000	101,290	+	2,000,000	20,700,000	91,290
				-	12,000,000	6,700,000	136,280
	청년 (소득 있는청년)	19,800,000	107,250	+	3,000,000	22,800,000	92,250
				-	13,000,000	6,800,000	145,150
	주거급여수급자	16,500,000	89,370	+	-	-	-
				-	11,000,000	5,500,000	121,440
44㎡	고령자	20,900,000	113,200	+	4,000,000	24,900,000	93,200
				-	14,000,000	6,900,000	154,020
	대학생 (소득 없는청년)	39,100,000	211,790	+	4,000,000	43,100,000	191,790
				-	29,000,000	10,100,000	296,350
	청년 (소득 있는청년)	41,400,000	224,250	+	7,000,000	48,400,000	189,250
				-	31,000,000	10,400,000	314,640
	고령자	43,700,000	236,700	+	9,000,000	52,700,000	191,700
				-	34,000,000	10,700,000	332,920
	신혼·한부모	46,000,000	249,160	+	12,000,000	58,000,000	189,160
				-	35,000,000	11,000,000	351,220
	주거급여수급자	34,500,000	186,870	+	-	-	-
				-	25,000,000	9,500,000	259,770

- 기본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의 10%를 계약금으로 계약체결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보증금의 90%는 입주 전에 납부합니다. (※개별안내 예정)
- 임대료 및 관리비는 매월 25일 전후 문자로 고지되며, 임차인의 농협은행 또는 대구은행 계좌를 직접 자동이체 등록하여 매월말일 자동출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일정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	자격검증 및 소명절차 (주택·소득·자산 자격심사)	⇒	당첨자 발표	⇒	주택열람 및 계약체결	⇒	입주기간
26.07.27.(월)		26.08.03.(월) ~ 26.08.12.(수)		26. 08 ~26. 09		26. 10 (예정)		별도 안내		30일

구분	신청·접수	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
방법	등기우편 제출	홈페이지 게시 및 대상자 개별 문자발송	별도 안내예정
장소	경상북도개발공사 예천군 호명면 행복로 35 주거운영팀 통합임대 담당자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 www.gbdc.co.kr (분양,임대,보상>임대공고)	

- 신청 접수마감 이후 1주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의 접수번호를 게시하오니, 접수여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시시오.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2026.08.12.(수) 우체국 소인분까지 도착으로 인정**하며 일반우편 제출 또는 제출서류 미비, 필수 기재사항 및 서명 미기재 등은 접수 불가합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자격검색 처리기간에 따라 단축 또는 연기될 수도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경상북도개발공사 홈페이지(www.gbdc.co.kr) 주택공고 게시판에 별도 게시합니다.
- 신청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 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 안내, 계약 및 입주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 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7.)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표기** 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공통 제출서류 **【필수】**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급신청서	• 공급형별 선택 및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	공사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내용 확인 후 인적사항 등 작성 후 서명하여 제출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동의방법)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필수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증빙자료) - 임차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되어야함) - 분양권: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 보유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아니오'에 표시하여 정자 서명 후 제출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내역전부표기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내역전부표기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초본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전부 표기 되도록 발급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내역전부표기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추가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 제출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통장사본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까지 청약통장 사본 제출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취소 및 계약해지 처리됨	본인가입 은행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행정복지 센터 또는 정부24
추가	임신진단서	[소득기준 산정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받은 임신진단서	병원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소득기준 산정시 가구원에 외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직계 존비속을 포함할 경우] ※ 단,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생략	출입국 관리 사무소

■ 유형 구분별 제출서류 **【해당하는 유형의 신청자만 제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청 년 계 층	청년 (만19세이상~ 만39세이하)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초년생	1)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퇴직 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1년 이내의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또는 수급자격 인정명세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지방고용노동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3)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자의 경우 예술 활동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 미가입자도 발급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해당자만 제출		1)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자 - 공 고 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신청인의 실제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는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해당 직장
		2)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그 외)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해당 직장(세무서)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이 경과한 자 중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하는 경우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 증명서(최종학력 서류로 제출)	해당 학교
대 학 생	대학생	- 재학증명서 - 다음 학기에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 - 다음 학기에 복학예정자는 휴학증명서 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 졸업예정증명서	해당 대학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해당 학교
	해당자만 제출	-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사실확인) - 신청자 본인 및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동일 거주지 확인)	행정복지센터
신 혼 부 부 등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 한부모 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	신청자 작성 [양식6]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확인서	신청자 작성 [양식7]
		신청자,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각각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1)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부부 증빙서류는 신청자, (예비)배우자 각각 모두 제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국민연금공단 등
		※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는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제출	해당 연금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내역으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신청인의 실제 근무지가 명시되어 있는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제출	해당 직장(세무서)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2)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청
		- (그 외)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해당 직장(세무서)
고령자		• 공통 제출서류 외 추가 제출서류 없음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제출】**

구비서류	비 고	발급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출산 및 입양 증빙서류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금액 산정 시, 자녀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출산 : 가족관계증명서(출생 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입양 : 입양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임신진단서 ※ 태아의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의 가구원수 산정 및 소득구간 판정 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배점의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혼부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다자녀가구, 신생아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금액 산정 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자격별 자산·소득 기준은 자격유형별 신청자격(상세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신청가능하며,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의 '청년'계층의 경우 신청 가능)

- ①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자녀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단, 형제자매가 반드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④ 청년, 예비신혼부부 및 우선공급 대상인 소년·소녀가정의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외국인 등 관련 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되며,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은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 다.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대학생, 청년 계층	10년
신혼부부·한부모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20년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2019.9.27.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유형별 신청자격

1. 대학생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를 충족하면 되며,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를 충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일 것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함.

※'다음 학기'란 입주시정기간 만료일 직후 도래하는 학기까지를 말함.

※'다음 학기' 입학 예정인 대학생은 공고일 현재 합격증명서 등을 통해 입학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대학생으로 공급신청한 자가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고등기술학교 및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합니다. 같은 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제55조의 특수학교,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및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와 동등 학력 인정자 포함하며 인정학력 취득시를 졸업시점으로 간주합니다.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2인인 경우 110% 이하일 것)**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본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부 또는 모를 의미, 본인 등본에 부, 모 모두 미등재시 세대 분리 전 같이 거주하던 부 또는 모를 말함)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576,036원 이하	120%
	2인	6,452,897원 이하	110%
	3인	8,168,429원 이하	100%
	4인	8,802,20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6인 이상의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대학생계층의 월평균소득기준 적용을 위한 가구원수**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 신청자 - 신청자의 부모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부모제외)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10,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7.)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㉓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며,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㉓와 ②~⑤를 충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함)

①-㉓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6.07.28.~2007.07.27.)

①-㉓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3)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①-㉓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었던 기간을 합산함. 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재학(휴학포함)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농업회사법인,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업체 등에 근무한 기간은 제외

※①-㉓3)의 '예술인'이란 「예술인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자를 말함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 2인인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576,036원 이하	120%
	2인	6,452,897원 이하	110%
	3인	8,168,429원 이하	100%
	4인	8,802,20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6인 이상의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25,1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청년계층'의 해당세대란 신청자가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①신청자 본인 ②신청자 직계존속으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③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니거나 단독세대주인 경우에는 신청자 본인만 해당함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④와 ③~⑤을, 한부모가족은 ①-㉔와 ③~⑤을 모두 갖춘 자.

①-㉔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④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①-㉔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②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는 120%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에는 130%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6,452,897원 이하	110%	7,626,151원 이하	130%
3인	8,168,429원 이하	100%	9,802,115원 이하	120%
4인	8,802,202원 이하		10,562,64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11,192,382원 이하	

*6인 이상의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 일 것

⑤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소득가산 적용 : 출생자녀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자산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한부모가족	X	2인	0인	110%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1인	120%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3인 이상	0인	100%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1인	110%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20%	120%	413,000,000원	54,510,000원
	X	2인	0인	110%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0인	100%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3인	1인	110%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0인	100%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4인 이상	1인	110%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20%	120%	413,000,000원	54,510,000원
	○	2인	0인	130%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0인	120%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3인	1인	130%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0인	120%	100%	345,000,000원	45,420,000원
		4인 이상	1인	130%	110%	379,000,000원	49,960,000원
			2인 이상	140%	120%	413,000,000원	54,510,000원

※출산자녀 기준: '23.3.28.이후 출생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 의미,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4. 고령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1961.07.27.이전 출생)

-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것.**
(단, 가구원수가 1인일 경우 월평균소득의 120%, 2인일 경우에는 110% 이하일 것)

주택공급 신청자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세대주인 청년 (세대기준)	1인	4,576,036원 이하	120%
	2인	6,452,897원 이하	110%
	3인	8,168,429원 이하	100%
	4인	8,802,202원 이하	
	5인	9,326,985원 이하	

*6인 이상의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579,278원을 합산하여 산정

-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42만원 이하일 것**

5. 주거급여수급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7.27.)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란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를 말함

※ 공고일 기준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에 한해서 신청 가능

6-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주택소유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인을 목적으로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 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 등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갱신 계약이 거절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③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 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 ②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③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에 유의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공사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6-2. 자산보유기준 및 자산·소득 산정방법

■ 자산보유기준

- 자산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산 산정방법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 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	지방세정 자료

			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약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임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임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소득 산정방법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근로복지공단 산재·고용보험 월평균 보수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7 기타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공급대상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border="1"> <thead> <tr> <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 </thead> <tbody> <tr> <td>청년</td><td>10년</td></tr> <tr> <td>신혼부부·한부모가족</td><td>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td></tr> <tr> <td>고령자</td><td>20년</td></tr> </tbody> </table> -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20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청년	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무자녀 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고령자	20년								

관련항목	유의사항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계층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단,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재청약 기준 - 과거 입주사실이 있거나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 중인 분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등(대학생 및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 장기근속자, 산업단지 근로자) 행복주택 입주자가 병역 의무 이행 후 동일 공급대상자로 다시 선정되는 경우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청년계층의 경우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요건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만6세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 거주기간 중 자격변동으로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제외사항 없이 확인함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 거주 중 청년계층의 소득활동이 변동되어 계약하는 경우에는 추후 갱신계약 시 별도안내할 예정입니다. - 단, 갱신계약 시 자동차, 자산, 주택소유 기준 초과 시 즉시 퇴거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행복주택의 계약자 또는 계약자의 배우자가 현재 타 임대주택에 계약자로 거주하고 있을 시 기존의 임대주택 명도 후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있으며, 동 주택은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등록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고가차량이 아닌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 할 수 없습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관련	*고가차량: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입주자격 기준 자동차가액 초과 차량 *임차인등: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6년의 경우 4,542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주차장 이용이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구 및 단지특성	• 계약 전 지구 및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개별확인 또는 공사문의하기 시기를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콘크리트 구조로서 건물의 뼈대는 철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 내·외부의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되어 세대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거공용공간 등이 원활히 관리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지하주차장이 없습니다. • 해당 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상주하는 관리인력 없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단지외부여건 • 학교 및 온천탕에 접하고 있어서 주변 여건이 주거지로 매우 선호하는 지역 ■ 단지내부여건 •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적구조임. • 본 주택의 진입로는 2개로 차량 진출입은 양호할것으로 판단됨. • 본 주택의 주차대수는 총21대(일반18대, 장애인1대, 경차2대)임. • 본 주택의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저층 세대에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음. • 배치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에는 시설물 작동 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변 여건 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 • 본 주택 지붕 및 옥탑층에 TV 시청을 위한 공청, 위성 안테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됨.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옥상층은 안전사고 등의 사유로 출입이 불가함. • 본 주택 옥상에 흡출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욕실에는 난방시설이 없음. • 세대현관문에는 디지털도어록(일반 핸들형)이 설치됨. • 본 주택 모든 세대의 현관중문은 설치되지 않으며, 승강장홀 및 복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세대 내부로 일부 전달 될 수 있음. 또한 현관부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위나 더위를 느낄 수 있음.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에어컨 설치하는 세대 내 지정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매립박스 또는 슬리브가 시공되어 있어 실내기 설치 위치가 제한됨. 일부 방의 경우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전기 회로 용량 부족 등의 이유로 인덕션 설치가 불가함. • 세대 외부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방충망 격자망보다 작은 곤충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므로 향후 교체 또는 변경이 불가함. • 발코니는 난방이 되지 않는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해야 하며, 물청소용 수전(스프레이션)과 세탁기 수전은 사용 후 반드시 수도꼭지를 잠가 동절기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함. 만약, 사용상부주의

관련항목	유의사항
	(수도꼭지 미잠금, 창문 개방 등)로 인한 동결 및 동파(누수포함)로 인한 피해(타세대 포함)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동결 및 동파세대 입주자에게 있음. - 인터넷은 입주자가 개별로 통신사업자(ISP)에게 가입하여 사용 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함. - 우편·택배보관함은 1층 전실에 설치되어있음. - 주택 내 전기 공급을 위해 한전 전주가 주택경계에 위치하므로 인근세대에 미관상 장애가 될 수 있음. - 한전으로부터 저압(380/220V)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되며, 공용부 전기 기본요금이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사용설비의 계약전력량 기준으로 부과되어 세대별 전기요금 부담이 클 수 있음. - 도난이나 기물 파손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주택 내 CCTV 설치로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주택 내 각종 인입(상, 하, 오수, 도시가스, 전력, 통신 등) 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 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수도 요금은 건물입구 메인 계량기를 검침(각 세대 사용량+공용부분 사용량)한 후 각 세대별 인원수에 비례해서 부과됨. - 본 주택단지 내 지하저수조, 부스터펌프 및 지하물탱크실내 집수정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복도 및 각 세대별 천장 일부가 기계/전기설비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 본 주택단지 내 지하저수조 청소를 위해 외부인 출입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본 주택은 관련법령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가 적용되어 있으나 세대 내부습도가 높고 내·외부 온도차가 큰 실내 환경의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대 내 적절한 환기조치를 하여야 함. - 발코니는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본 주택 세대에는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모든 조명등기구가 LED등기구로 설치되므로 개인취향에 따라 눈부심을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등기구의 교체나 변경시공은 불가함.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등이 설치되어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함. - 세대 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음. ■ 일반사항 등 -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되어, 사업승인도면과 준공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입주사항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잔금납부 및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임대료 납부는 모바일(문자) 고지 및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합니다.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7-1.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대상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포항 우현 행복주택	경상북도개발공사	(주)델포스건설	-	(주)동원건축사사무소

2026. 7. 27.



경상북도개발공사

문의: 054-650-3115